과천도시공사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
2026년 5월 11일

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

공사 지침 제102호

과천도시공사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지침 중 개정지침(안)

제1조 중 "구성하여 이용 고객 및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한 투명하고 열린 경영으로"를 "구성·운영함에 있어 시민 참여 기반 의사결정 및 ESG경영 실현을 통해 공사 경영의 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고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총35명"을 "총 3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부서장"을 "부서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80%를"을 "100분의 80을"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의무)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은 심의 자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6조 중 "기타의"를 "그 밖의"로 하고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추첨하여"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보존한다."를 "관리한다."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을 "수당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 (개정 2026. 5. 11. 지침 제10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과천도시공사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지침	**과천도시공사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지침**	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(이하"공사"라고 함) 시민참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고 함)를 구성하여 이용 고객 및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한 투명하고 열린 경영으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---------- 구성·운영함에 있어 시민 참여 기반 의사결정 및 ESG경영 실현을 통해 공사 경영의 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고, ----------.	목적 명확화
제2조(생략)	**제2조 (현행과 같음)**	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35명 내외 인력풀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③ 외부 위원은 지역유관단체,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 등 공사 경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공사 사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내부 위원은 사장과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. ④ 재적 위원은 특정 성비의 80%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**제3조(구성)** ① ---------- 총 35명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부서의 장----------. ④ ---------- 100분의 80을 ----------. ⑤ (현행과 같음)	용어 정비 용어 정비 용어 정비
제4조부터 제5조 (생략)	**제4조부터 제5조 (현행과 같음)**	
<신설>	**제5조의2(위원의 의무)**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위원은 심의 자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	위원의 의무 신설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**제6조(현행과 같음)** ---------- 그 밖의 ---------- ---------- 해당 ----------.	용어정비
제7조(회의) ①~②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재적위원의 구성은 추천된 인력풀 위원 중에서 추첨하여 구성한다. ④ (생략) ⑤ 회의 시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한다.	**제7조(회의)**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구성한다. -----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----- ---------- 관리한다.	용어의 명확화
제8조(실비보상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」을 준용한다.	**제8조(수당지급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따른다.	용어 정비
	부 칙	
	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	